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69
----------	-------

발의연월일 : 2026. 9. 3.

발 의 자 : 전진속·박균택·손 솔
권칠승·이주희·전종덕
서삼석·이개호·백혜련
오세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지원금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난 참사의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의료지원금을 기간의 제한 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하여 의료지원금을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피해자의”를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으로 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 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생활지원금 등)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료지원금: <u>피해자의</u> 10·2 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 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2. ----- <u>피해자가 생존</u> <u>하는 동안</u>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